

2-3-1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수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학원의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수업) ① 대학원 수업은 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업의 운영은 필요 시 야간에도 할 수 있다.

② 교과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원격수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5.12.2.>

제 2 장 입 학

제4조(입학지원서류) 학칙 제7조에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학지원서
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3. 출신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
4. 연구계획서
5.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5조(입학전형) ①대학원 입학전형은 3인 이상의 교수가 시행한다.

② 입학지원 서류심사, 구술시험 및 면접 등의 성적배분비율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시험 이외에 필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입학허가)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 3 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유급, 편입학 및 재입학

제7조(등록의 종류) 대학원 등록의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

1. 정규등록 : 수업년간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2. 입학등록·편입학등록·재입학등록 :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

3. 연구등록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년한이 초과되어 논문제출자격 또는 학위논문대체 인정 심의 자격을 재부여받은 학생 중 논문 및 연구보고서 지도만 필요한 경우

나. 가 목 외 추가학점 이수가 필요한 경우 학점등록을 포함한다.

4. 학점등록 : 수업연한 내에 소정의 학점(P/F교과 포함)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수료자 중 학위논문대체를 위하여 교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생

제8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창업휴학의 경우 총장은 창업의 업종 및 타당성 등을 관련부서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1. 병역휴학 : 군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2.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3. 임신·출산·육아휴학 :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법인사업자에 한함)

5.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유서

②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군입대로 인한 휴학 : 군 입영일(소집일) 1일전까지

2. 군입대를 제외한 휴학 : 등록 후 휴학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미등록 휴학인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

3. 질병, 천재지변 또는 법적조치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학기말 시험 시작 일주일 이전

③ 군휴학자가 입영(소집)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귀향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하거나, 복학하여야 한다.

④ 휴학 신청자가 휴학사유의 상실로 인하여 휴학신청 후 2주 이내에 휴학취소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심의를 거쳐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학기개시 후 휴학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지연기간은 결석처리 한다.

제9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복학원을 등록 개시일로부터 1주일 이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0조(퇴학)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제적) 학칙 제17조 제3호에서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라 함은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5 미만인 학생을 말한다.

제12조(편입학) ① 편입학한 학생은 학칙 제20조가 정하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의 결정에 따라 소요학점의 일부를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교에서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편입학한 학생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요학점(논문세미나 학점을 제외한 다)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학)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학기개시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제14조(재학년한 등) ①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포함된다.

②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퇴학 또는 제적된 기간은 제외한다.

제 4 장 교과과정 및 수강신청 등

제15조(교과과정) 대학원 학생의 수료를 위한 교과과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12.2.>

제16조(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 ①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대학원장은 매 2년마다 교과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논문세미나 또는 연구세미나의 수강) <삭제 2025.12.2.>

제18조(논문·연구보고서 지도 학생수의 제한)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논문·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동일학기에 2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수강 신청 및 변경) 대학원의 학생은 매 학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의 수강신청 및 변경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20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의 강의, 실습을 담당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 전임교원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제21조(담당교과목수의 제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한 학기에 2과목(논문세미나Ⅱ와 연구세미나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제 1 절 입학 전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

제22조(학점이전) ①입학 전에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점이전은 대학원의 해당 학과 또는 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③ 학점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후 제1학기 말 이전에 학과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수업년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이전이 인정된 학생의 수업년한은 학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

제24조(학사학위과정 학점의 이전) ①학칙 제23조 제1항에 의한 학점이전은 그 성적이 B 이상인 것에 한하여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점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후 제1학기 말 이전에 학과 주임교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수업년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의 이전이 승인된 학생의 수업년한은 학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논문지도

제26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제1학기 말 이전에 정한다.

②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주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27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본교 간호학 전공 교원으로 한다.

제 7 장 학위청구논문 등 제출자격시험

제 1 절 영어 및 종합시험

제28조(영어시험) ① 학칙 제28조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영어교과목을 이수(P/F)하거나 [별표2]에 해당하는 공인영어 점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종합시험) ① 학위청구 논문제출자와 학위청구논문 대체자의 종합시험은 3과목을 응시하여, 각 과목별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 ② 대학원 학생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종합시험에 응시한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시험 합격은 무효로 한다.
- ③ 제2항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종합시험의 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 절 응시신청 및 출제

제30조(응시신청)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응시료와 함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출제) 각 출제위원은 각 시험별로 원칙적으로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

제 8 장 학위청구

제 1 절 논문의 체제와 제출절차

제32조(논문의 체제) ①학위청구논문의 표제지 등 체제는 “예수대학교 대학원학위청구논문 체제”에 따르되, 본문과 참고문헌은 전공학문분야별 전문학술지의 편집체제에 따른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로 쓴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국문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학위논문작성계획서 제출 및 발표)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심사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학과에 제출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작성계획서 1부.
2.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1부.
3. 연구윤리교육 이수확인서(1년 이내)1부.

② 제출된 학위논문작성계획서의 유효기한은 제출학기를 포함하여 3년으로 한다. <신설 2024.6.4.>

제34조(학위논문 심사신청) ①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석사 학위논문을 학사일정에 의거해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심사 신청서 1부
2. 심사용 논문 3부
3. 심사료

제35조(논문의 공개발표) 삭제<2025.3.11.>

제36조(학위논문 유사도 점검) 논문제출자는 학위논문표절(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도교수가 점검하며 점검 확인서를 논문 심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①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등록금은 제13조의3에 따른다.<개정 2025.12.2.>

② <신설 2024.6.4.><삭제 2025.12.2.>

③ <신설 2024.6.4.><삭제 2025.12.2.>

제 2 절 논문의 심사

제38조(논문심사위원) ①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3.11.>

④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신설 2025.3.11.>

⑤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신설 2025.3.11.>

제39조(논문의 심사) ①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3.11.>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논문심사는 2회 이상 하여야 한다.<개정 2025.3.11.>

제40조(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심사위원회의 회의정족수) 심사위원회는 2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42조(논문의 합격판정) ① 대학원 학위논문은 “합격(P)” 또는 “불합격(F)”으로 사정한다.

② 학위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43조(합격된 논문의 제출) ① 학위과정에서 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생은 학위수여일 30일 전까지 학위논문 3부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학위논문 최종 원본파일과 학위논문원본파일 제출확인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논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 3 절 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개정 2025.12.2.>

제44조(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 신청 및 심의) ①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 신청은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대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하게되는 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

1. 대학원 학칙 제20조 제2항의 학점 외 3학점 추가이수 및 심사용 연구보고서 제출

2. 대학원 학칙 제20조 제2항의 학점 외 9학점 추가이수

3. 입학 후 국내 또는 국제 전문학술지(KCI(후보지포함), SCI(E), SCOPUS 등)에 발표된 논문 실적 충족(단,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2인 발표 논문에만 함)

③ 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자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정 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5.12.2.]

제44조의2(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 제출자격 재부여) ① 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 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구등록 또는 학점등록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의3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학점 추가이수가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지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2.]

제45조(연구보고서 심사) ①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심사용 연구보고서 2부와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보고서 심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합격(P)”, 또는 “불합격(F)”으로 판정한다.

③ 주임교수는 연구보고서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2.]

제9장 직제

제46조(주임교수) 대학원 학칙 제 38조의 2에 따라 주임교수를 둔다.

제47조(주임교수 자격) 주임교수는 본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다.

제48조(주임교수 직무) 주임교수는 당해 학과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운영 및 제반 학사업무를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지도교수 배정 받기 전의 대학원 학생의 학습지도에 관한 일
2. 교과과정운영 및 교과목 설강에 관한 일
3. 지도교수 및 강사추천에 관한 일
4. 선수과목 결정 및 동일 이수과목 인정에 관한 일
5. 학점 및 자격시험에 관한 지도 및 추천에 관한 일
6. 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일
7. 기타 학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49조(주임교수 위촉) 주임교수는 총장이 임명한다.

제50조(논문 지도교수) ① 대학원 학생의 논문작성 및 진로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8조 원칙에 따라 지도교수를 둔다.

② 논문 부정행위 발생 시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직무) 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담당 대학원 학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지도
2. 대학원 학생의 교과목에 관한 지도
3. 논문 연구계획서 작성 · 제출에 관한 지도
4. 대학원생 진로 및 기타 학사업무에 관한 지도

제52조(논문 지도교수 위촉) 주임교수는 대학원 학생의 전공분야와 학생 의견 수렴 후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지도교수를 위촉한다.<개정 2024.6.4.>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는 고등교육법 개정(2017.5.)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과과정 편성표<개정 2025.12.2.>

1. 석사학위 수료 학점이수기준

구 분		교과이수구분				이수 학점	비고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 선수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9 *논문세미나Ⅱ P	15	.	24	
	2018-2019학 년도 입학자	.	9	15 *논문세미나Ⅱ or 연구세미나P	.	24	
	2020-2024 학년도 입학자	.	12	12 *논문세미나Ⅱ or 연구세미나P	.	24	
	2025학년도 이후 입학자	.	15	9	.	24	

[별표2] 학위청구논문 등 제출 자격 취득을 위한 공인영어점수 기준

공인영어 점수 기준*				
TOEIC	TOEFL			TEPS
	PBT	CBT	iBT	
650점 이상	500점 이상	173점 이상	61점 이상	500점 이상

* 학위청구 논문 등 심사신청일 전까지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